

# ‘협회 등의 설립’ 관련 공공기록물법 개정 건의 사항

## 1 개정(신설) 이유

- 국가기록원은 기록문화 확산과 기록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, 기록관리 분야 전반의 교류·협력·교육·연구 등 추진과 기록전문가의 전문성을 향상할 민간단체가 부족한 실정임
- 기록관리 분야의 교류·협력과 교육·연구 등을 강화하고 기록문화 확산 및 기록전문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단체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
- 기록관리 분야 민간단체가 사단법인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, 「민법」상의 규정만으로는 설립이 용이하지 않으므로, 공공기록물법에 관련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
- 이에 민간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

## 2 유관 분야의 관련 조항

- 도서관법 제17조(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)
  -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교환, 업무 협력과 운영·관리에 관한 연구,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,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,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(이하 “협회등“이라 한다)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.
  -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협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○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4조(협회)

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,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연구,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,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(이하 “협회“라 한다)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.

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 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**3** 제안 내용 및 신규조문 대조표

### ○ 공공기록물법 제42조(기록물관리 교육·훈련) 개정

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업무 종사자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

②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관리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운영하거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2. 휴직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○ 공공기록물법 제42조의2(협회 등의 설립) 신설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관리 분야의 교류·협력 및 교육과 연구를 도모하고 기록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(이하 “협회 등”이라 한다)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- ③ 협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공공기록물법 조문대비표(안)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2조(기록물관리 교육·훈련)</p> <p>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기록물관리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42조(기록물관리 교육·훈련)</p> <p>① ----- ----- -- <u>기록물관리업무 종사자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관리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운영하거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협회 등에서</u></p>

<신 설>

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2. 휴직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42조의 2(협회 등의 설립)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관리 분야의 교류·협력 및 교육과 연구를 도모하고 기록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(이하 “협회 등“이라 한다)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- ③ 협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.